

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

우리 구 68-37번지 일대에서 추진하는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2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1. 공고기간 : 2026.3.12.(목) ~ 2026.3.19.(목)

2. 공사내역

사 업 내 역
가. 공 사 명 :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발 주 자 :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다. 시 공 자 : (주)대우건설
라. 감 리 자 : (주)아이티엠 건축사사무소
마. 건축개요
○ 대지위치 : 성북구 장위동 68-37번지 일대
○ 대지면적 : 70,322㎡ / 연면적 343,958.53㎡
○ 규 모 : 지하5층,지상35층 / 공동주택(아파트)23개동 1,9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○ 공사기간(예정) : 2026.03.31.~ 2030.04.30.
○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3.7.1. (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:2025.6.26.)
바. 총공사비 : 787,188,080,000원(VAT별도)
사. 안전점검비용 : 310,352,557원(VAT별도)

3. 안전점검 주요내용

- 가.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건설공사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
- 나. 점검시기 : 현장협의
- 다.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791호)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,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함

4. 참가자격 :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

- 가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
- 나. 성북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
- 다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 제3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·설계·시공·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사 불가

5. 접수기간 및 방법

- 가. 접수기간 : 2026.3.13.(금) 9:00 ~ 2026.3.19.(목) 18:00
- 나. 접수장소 : 서울시 성북구청 9층 주거정비과 (재정비사업1팀, 최초록 ☎02-2241-2837)
- 다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

- 1) 방 문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, 9층 주거정비과
- 2) 이 메 일 : ccr5037@sb.go.kr

라. 제출서류 (※ 방문 접수 시, 서류 일체 PDF파일 이메일 별도 제출)

- 1) [서식1] 참여신청서
- 2)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
- 3)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
- 4) [서식2]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
- 5) [서식3]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(선정업체 작성용)
- 6) [서식4] 참여기술인 보유현황 집계표
- 7) [서식5] 참여기술인 보유현황 및 기술자 보유증명서등 붙임 증빙서류
- 8) [서식6]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및 붙임 증빙서류
 -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(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)
 - 성북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(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)

- 9) [서식7] 신용평가등급 및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(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)
- 10) [서식8]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입찰서(사용인감계 날인, 부가세(VAT)별도 기재)
- 11) [서식9] 입찰참여확인서 1부(방문 접수 시, 밀봉에서 제외)

6.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

가. 평가방법 : 성북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[붙임2]을 적용

나. 업체선정

- 수행기관 평가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하며,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 가격이 낮은 업체로 지정(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지정)
-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,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성북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

다. 평가기준

평가항목	평가배점	
	1억원 이상	1억원 미만
사업수행 능력평가	70점 (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× 70/100)	50점 (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× 50/100)
가격평가	30점 (가격평가점수 × 30/100)	50점 (가격평가점수 × 50/100)
총 계	100점	100점

7. 기타사항

- 가.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나.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,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이 취소됩니다.
- 다. ‘나’ 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.
- 라.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,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.

- 마.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바.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.
- 사.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,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아.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[성북구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sb.go.kr>)-고시·공고]에 게시합니다.
 - ※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.
 - ※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.

- 붙임 1.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.
2. 제출서류 서식 1부.
3. 안전점검 예상비용 산출내역 1부.
4. 예정 공정표 1부. 끝.